낙농정책연구소 낙농소식

조 석 진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쿼터폐지 이후 EU 낙농의 제약요인

2015년 3월 말 EU의 쿼터가 폐지된 이후 주요 EU 회원국의 우유생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가운데 2013년 현재 EU 전체 생산량의 48.2%를 차지하는 독일(21.5%), 프랑스(17.0%), 영국(9.7%)의 주된 제약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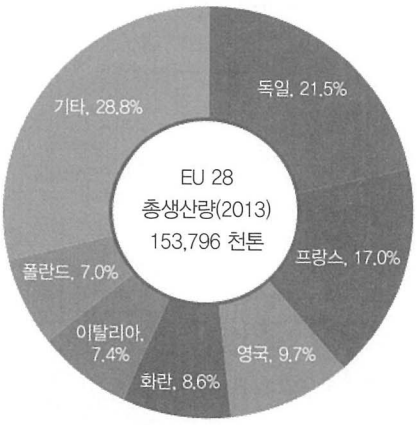

EU의 회원국별 우유생산 비중(2013)
자료: eurostat 2013(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statistics 2014 edition)

첫째, EU 회원국 중 우유생산이 가장 많은 독일은 북부지역의 환경비용 상승 및 높은 지가와 남부지역 낙농가의 규모의 영세성이 금후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 외에 일부 지역에서 유업체와 낙농가의 접근성이 낮을 뿐 아니라 영세한 협동조합들의 수출시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금후 독일의 우유생산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둘째, 프랑스는 쿼터제 하에서의 안정된 원유가격에 익숙해져 온 탓으로 쿼터폐지 이후 예상되는 국제시장의 가격불안정에 대한 적응이 문제로 보인다. 또한 수출에 주력해 온 대규모 유업체들은 대부분 '시장질서유지협정(Orderly Marketing Agreement: OMA)'에 가입하고 있어 추가적인 수출시장이 확보되지 않는 한 집유를 늘리지 않을 전망이다.

	환경	토지제약	수출시장
독일	환경제약 : 특히 북부지역의 분뇨처리에 따른 환경비용이 매우 큼	높은 지가 : 북부지역의 높은 지가와 남부의 규모의 영세성이 규모확대를 제약	일부 낙농가와 유업체 간의 접근성이 떨어지며, 대부분 영세한 협동조합은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
	가격불안정	**수출시장**	**경종과의 경쟁**
프랑스	프랑스 낙농가들은 유가변동에 적응되어 있지 않으며, 수출시장의 가격변동이 매우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대규모 유업체들은 수출에 주력하며, '시장질서유지협정(OMA)'에 가입하고 있어 판로확보 없이는 집유를 늘리지 않음	낙농은 생산요소이용에 있어서 경종부문과 경쟁관계에 있음. 따라서 경종부문의 수익증대는 우유생산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가격보장	**가공능력**	**농가의 관심사**
영국	영국의 유업체는 5~6십억ℓ를 국내 시유시장에 공급하며, 낙농가는 시유와 유사한 유대가 보장되지 않는 한 증산의욕이 낮음	영국의 유업체는 가공능력의 한계에 직면해 있음. 따라서 추가적인 가공시설의 증설이 없이는 생산확대가 어려운 상황임	일부 낙농가는 생산성이 매우 높음. 그러나 대부분의 낙농가는 소비자기호 및 이윤극대화보다는 오로지 생산에만 집중하는 편임

자료: 「The European Dairy Industry Towards 2020」, Promar International.

셋째, 그동안 쿼터제 하에서 독일 및 프랑스에 비해 생산자유대가 비교적 낮게 유지되어 온 영국은 대부분 국내 시유시장에 집중해 왔다. 따라서 대부분의 낙농가는 시유용원유와 유사한 수준의 유대가 보장되지 않는 한 증산이 어려울 전망이다.

그뿐 아니라 현재 영국의 유업체는 가공능력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가공시설의 추가적인 증설이 없이는 생산 확대 또한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그 외에 생산성이 높은 일부 대규모 낙농가를 제외하면, 소비자 기호변화와 같은 시장의 변화에 둔감한 편이며, 오로지 생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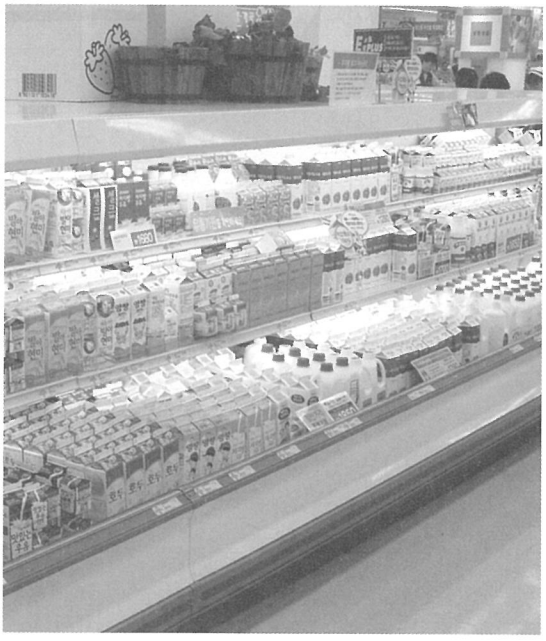

이상에서 2013년 현재 EU 회원국 원유생산의 48.5%를 차지하는 주요 3국의 원유생산에 있어서의 제약요인을 감안할 때 금후 쿼터폐지에 따른 영향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http://www.promar-international.com/, http://ec.europa.eu/eurostat/web/products-statistical-books/-/KS-FK-14-001
번역 :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석진

일본 2016년부터 원유거래입찰제 도입

일본농림수산성은 지난 10월 16일 생산국장의 자문기관인 「원유거래방식의 검토회의(좌장 j-milk 마에다 전무 외 지정단체, 유업체 등 16인으로 구성)」가 마련한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유제품용 및 음용유용 원유의 일부를 대상으로 입찰제도를 시험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을 명기함과 아울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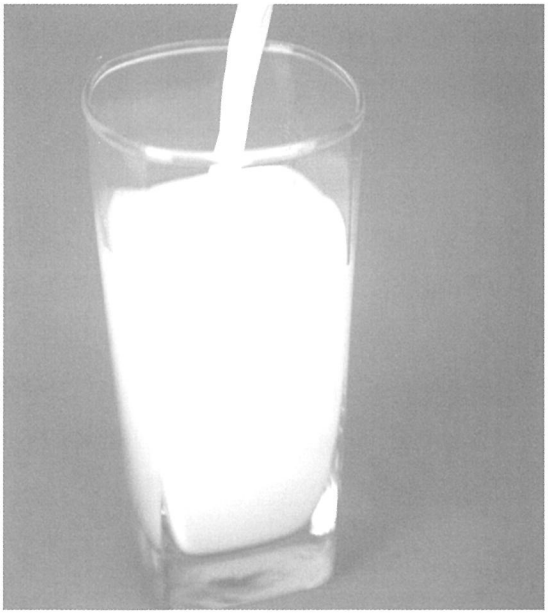

1. 2016년부터 인상된 생산자유가를 소매가격에 반영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여 2016년 말까지 유가교섭을 종료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2. 보다 원활하고, 객관성이 높은 유가형성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우유생산비통계와 관련하여 도부현의 우유생산비 공표시기를 북해도와 동일하게 맞추는 문제 등) 제공에 대한 검토,

3. 유가교섭 결과뿐 아니라 경과 및 타결된 금액의 근거를 포함하여 낙농가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

4. 프리미엄원유 거래와 관련하여 대상이 되는 프리미엄원유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생산자가 유리한 원유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등을 내포하고 있다.

보고서발표 당일 좌장인 마에다 전무는 입찰을 통한 원유거래와 관련하여 "2016년부터 2년간 시험적으로 실시하며, 원유입찰거래의 의의 및 효과

등에 대해 매년 검토하고, 시험적인 시행기간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임"을 언급하였다.

보고서에는 「입찰거래의 기본적인 범위」에 대한 내용이 명기되며, 그에 따라 입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 경우 범위와 관련해서는 2010년에 「유제품·가공원료유제도등검토위원회」가 정리한 내용이 있으나 이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입찰은 유제품용(액상유제품, 탈지분유, 버터, 치즈) 원유를 대상으로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채 실시한다. 음용유용 원유에 대해서는 낙농가 및 낙농가집단이 주체적으로 판매를 원하는 「특색 있는 프리미엄 원유」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그 경우 대상수량은 유제품용의 경우 협의를 통해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수량으로 하고, 음용유용은 낙농가 및 낙농가집단이 희망하는 수량을 대상으로 하기로 하였다.

입찰회수는 연도별, 반년별, 분기별, 월별 및 필요할 경우 언제든 등으로 구분하며, 동시에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키로 하였다.

첫째, 지정단체는 거래가격 및 거래물량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제도의 도입초기에는 매입가격 및 매입수량의 상한과 하한의 설정을 가능토록 한다.

둘째, 유찰될 경우는 재입찰을 실시하고, 그래도 유찰이 될 경우는 지정단체가 유찰된 물량에 대한 판단을 한다.

셋째, 송유는 원칙적으로 지정단체가 실시하되, 역외에 대한 수송비는 유업체가 실비를 부담토록 한다.

또한 보고서에는 "유제품용 원유거래의 입찰제 실시에 따라 유가하락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농림수산성의 우유·유제품과의 혼다 미쯔히로 유제품조사관도 기자회견장에서 농림수산성도 입찰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의 역할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자료: JDC뉴스(제12호, 2015.10.20)
번역 및 요약: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